



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세칙

[제목개정 2020. 8.10]

제정일	2016. 3. 1
개정일	2023.11. 1
개정차수	8차
담당부서	교육혁신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세칙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22조(교육과정), 제26조(평가시험), 제27조(성적)에 의거 본교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8.10)

제 2조 (교육과정 개발) ①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2조 교육과정개발 및 개편에 의거 교육과정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통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학부(과)장이 되며,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및 산업체 실무전문가로 하며, 산업체 실무전문가의 구성비를 2분의 1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8.10, 2023.11. 1)

③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교육센터에서 개발하며,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교양교육센터장이 되며,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는 센터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23. 11. 1)

[제목개정 2020. 8.10]

제 3조 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① “역량기반 교육과정”은 미래요구역량, 대학의 정체성, 산업수요가 반영된 본교의 핵심역량과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·수준별로 도출한 직무역량을 학과의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·핵심역량개발 목표에 맞추어 체계화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② “직무역량 교육과정 개발 ”은 자체적인 직무분석 또는 NCS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을 말한다.

③ “직무역량평가”는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(직무역량)를 학습자가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④ “핵심역량평가”는 핵심역량개발목표를 학습자가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⑤ “직무역량 성취도”는 학생 직무역량 성취도 및 핵심역량 성취도 평가규정 제 6조 제 2항의 산출식에 의해 도출된 값을 말한다.

⑥ “핵심역량 성취도는” 학생 직무역량 성취도 및 핵심역량 성취도 평가규정 제 6조의 2 제 2항의 산출식에 의해 도출된 값을 말한다.

⑦ “직무역량 향상도”는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성과를 나타내는 일차적인 성과지표로서 졸업예정자 직무역량 성취도의 증감률을 측정하여 산출한다. (개정 2023.11. 1)

⑧ “향상 교육”은 교과목 직무역량평가 및 핵심역량평가에서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질 관리를 위한 정규/비정규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 (개정 2023. 1. 1)

⑨ “심화 교육”은 교과목 직무역량평가 및 핵심역량평가에서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을 위한 정규/비정규 전공심화(실무)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. (개정 2023. 1. 1)

⑩ “교수학습지침서”는 교과목담당자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안의 개념으로,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⑪ “역량 성취도”는 학생 직무역량 성취도 및 핵심역량 성취도 평가규정 제 5조의 2 제 2항에 의해 도출된 값을 말한다. (신설 2021. 1. 1)

[전문개정 2020. 8.10]

제 4조 (교육과정 개발 절차)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
2. 인력양성유형 설정,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목표 수립
3. 직무정의 및 직무역량 분류 체계기술
4. 직무역량기반 직무모형 설정
5. 직무역량기반 직무모형 검증
6. 핵심역량 교육모형(교과목) 설정 및 검증
7. 역량기반 교과목 도출
8. 역량기반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
9. 직무역량/핵심역량과 교과목 연계성 기술
10.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
11. (삭제 2023. 1. 1)

[전문개정 2020. 8.10]

제 5조 (교육과정 개발 연구비 지급) ①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
② 교육과정 개발 연구비는 대학 「연구지원센터시행세칙」에 의거 집행한다. (개정 2020. 8.10)

[제목개정 2020. 8.10]

제 6조 (삭제 2016. 9. 1)

제 7조 (삭제 2023.11. 1)

제 8조 (수업설계) ①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매 학기 개시 전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강의의 운영을 위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 4.15)

② 강의계획서는 교과목 기본정보,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정보, 교육목표(직무역량개발목표, 핵심역량개발목표), 직무역량 학습모듈 활용계획, 주차별 학습내용,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개발을 위한 교수방법,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되 교과목 프로파일에 명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, 핵심역량(주역량, 보조역량) 및 행동지표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
③ 교육혁신지원센터는 강의계획서 작성기간 전에 그 작성서식을 마련하여 교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강의계획서는 이 서식을 이용해 작성해야 한다. (개정 2019. 3. 1, 2019.11. 1, 2023.11. 1)

제 9조 (수업운영) ① 교과목의 수업에서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. 단, 학습모듈이 미개발된 능력단위의 경우는 학습모듈이 개발될 때까지 기존의 유사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
② “교수학습지침서”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습모듈의 현황을 참고하여 교수학습지침서(이하 “지침서”라 한다)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.

1. 지침서는 교수자 및 학습자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워크북 교안 등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.
2. 지침서는 교육혁신지원센터의 장이 규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. (개정 2019. 3. 1, 2019.11. 1)
3. (삭제 2019. 3. 1)
- ③ “교수학습방법”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는 핵심역량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을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하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여 수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- ④ “외부인사활용” 교수자는 내실있는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외부 산업체 인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- 제10조 (수업평가) ① “평가구성” 수업평가는 진단평가, 출석평가(20%), 직무역량평가(70%), 핵심역량 평가(10%)를 포함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- ② “평가계획” 교수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교수자는 담당강좌의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 2. 평가계획은 제 11조의 향상 및 심화 교육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 3. 확정된 평가계획서는 강의계획서 게시 기간 중에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한다.
 - ③ “진단평가” 수업초기에 시행하는 학습자의 자가진단적 평가로서 수행준거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의 지식, 기술 관련 직무역량 진단과 핵심역량 진단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해야 하며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. (개정 2020. 8.10)
 - ④ “출석평가” 학습자의 기본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이며 학칙에서 정한 기준시간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받았더라도 F학점으로 처리한다.
 - ⑤ “직무역량평가” 수행준거 및 관련 지식, 기술, 태도에 대한 평가이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 1. 교수자는 강좌 당 2회 이상의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 2. 평가 배점의 70%이상을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해야 하며 나머지는 능력단위요소의 지식, 기술, 태도를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3. 교수자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 4. 직무역량평가는 해당 교과목에 적용되는 수행준거(자체수행준거를 포함한다)를 반영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20. 8.10, 2023.11. 1)
 5. 교수자는 직무역량평가를 1회 실시할 때마다 각 학생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 - ⑥ “핵심역량평가” 는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평가이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.
 1. 교수자는 강좌 당 2회의 핵심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 2. 핵심역량평가는 해당 교과목에 적용되는 행동지표를 반영해야 한다.
 3. 교수자는 핵심역량평가를 1회 실시할 때마다 각 학생에 대하여 핵심역량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.

[항신설 2020. 8.10]

- ⑦ “평가결과” 계획서의 모든 평가가 종료되면 교수자는 각 학생에 대하여 출석평가와 직

무역량, 핵심역량 정도를 종합한 평가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
1. 평가결과서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취수준과 성취결과가 표기되어야 한다.
2. 평가결과 만점의 70%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할 경우 성취결과를 충족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⑧ “능력단위이수집계표” 계획서의 모든 평가가 종료되면 교수자는 해당 교과목에 반영되어 있는 능력단위요소에 대하여 학생들의 이수 여부가 표기되는 능력단위이수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.

⑨ 본조 제 1항부터 제 8항의 사항은 교과목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. (신설 2023. 1. 1)

제11조 (향상 및 심화 교육) 교수자는 교과목 평가에서 직무역량 성취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상교육을 성취수준을 만족시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
① 향상교육과 심화교육은 정규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
② 향상교육과 심화교육은 각 직무역량평가 1차 평가 후 14주차 내에 시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)

③ 향상교육을 시행한 후에는 재평가를 하여 능력단위요소 성취와 성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심화교육을 시행한 후에는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여 성적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2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본교 「학칙」, 「학사내규」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개정 2023. 1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